

◎ 분실물 주웠다면

○ 바로 가까운 경찰서, 파출소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발견한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

-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(신고하기까지 부담한 교통비나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

-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(물건 가격 5 ~ 20%에 상당하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)

-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(분실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3달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)

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시설 내에서 분실물을 발견했으면

○ 역이나 백화점등 시설에서 분실물을 주웠 때에는 역무원이나 종업원등을 통해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분실물 발견한 뒤 24시간 이내에 시설 관리자에게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

-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

(신고하기까지 부담한 교통비나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)

-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

(물건 가격 5 ~ 20%에 상당하는 사례를 받을 수 있는 권리)

-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

(분실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에는 3달 후에 물건을 받을 수 있는 권리)

를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